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00 발의연월일: 2021. 8. 4.

발 의 자:고용진·강득구·김경협

김교흥 • 박성준 • 박 정

백혜려 • 서영교 • 송재호

양향자 · 오영환 · 유정주

유관석 · 윤후덕 · 이형석

임오경 · 임종성 · 정일영

진성준 • 한준호 • 홍익표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,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 한도,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할 경 우에는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.

한편,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의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현행 법보다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로 세액공제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인구가 20%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.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기반이 내 실화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2018년 기준 43.4%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실정임.

이에 소득·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,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 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59조의3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90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,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"을 "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,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"으로 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59조의3(연금계좌세액공제) 제59조의3(연금계좌세액공제)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 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 한 금액(이하 "연금계좌 납입 액"이라 한다)의 100분의 12[해 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 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 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한다. 다만, 연금계좌 중 연 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---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, 연금저축계좌에 것으로 하고,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 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 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 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 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 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0만원-----

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 로 하되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 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 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 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, 연금저축계 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 로 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